■ 검찰사건사무규칙 [별지 제157호의9서식] <개정 2024. 1. 12.>

○○○검찰청

(000-0000-0000)

제 0000-0000 호 0000. 00. 00.

수 신 : ○○○법원장 발 신 : ○○○검찰청

제 목 : **잠정조치청구(사법경찰관 신청)** 검 사 ㊞

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 신청이 있는바,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아래와 같이 잠정조치를 청구합니다.

[ ]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

[ ]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이나 그 주거, 직장, 학교,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

[ ]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

[ ] 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

[ ]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

행위자	성명 ( )	
	주민등록번호 (세)	
	직업	
	주거	
변호인		
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	성명	주거
	직장	
범죄사실 및 잠정조치가 필요한 이유	별지 신청서의 내용과 같음	
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	판사 ㊞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